

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수시공시

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122 조(수시공시) 및 신탁약관 제 51 조(수익자에 대한 공고등)에 따라 약관 및 투자설명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공시합니다.

- 투자신탁의 명칭: BEST 모아모아 적립식 주식투자신탁 1 호
BEST 알부자 적립식 혼합투자신탁 1 호
미래든 적립식 주식투자신탁 1 호
BEST 장기주택마련 혼합투자신탁 1 호
Tops Easy Trading 시스템 혼합투자신탁 1 호
Tops 적립식 혼합투자신탁 1 호
Tops 엄마사랑 어린이 적립식 주식투자신탁 1 호
Tops e 주식투자신탁 1 호
Tops 씨리얼 적립식 배당 혼합투자신탁 1 호
Tops 프리미엄 주식투자신탁 1 호
Tops 노블레스 종류형 주식투자신탁 1 호
Tops 아름다운 SRI 주식투자신탁 1 호
Tops Value 주식투자신탁 1 호
SH Tops Life 퇴직연금 성장 주식투자신탁-모
SH Tops Life 퇴직연금 SRI 주식투자신탁-모
SH Tops Life 퇴직연금 주식투자신탁-자(7)
SH Tops Life 퇴직연금 40 채권혼합투자신탁-자(1)
SH Tops Life 퇴직연금 SRI 채권혼합투자신탁-자(2)

2. 시행일 : 2007. 6. 20.

3. 신탁약관 변경 주요 내용

- ◇ 변경 사유 : 투자대상 중 주식에 공모주 포함

◇ 변경 대비표

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	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
<p>제 36 조(투자대상등) ①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 및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,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(<u>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</u>)(이하 “주식”이라 한다)</p> <p>(이하 생략)</p>	<p>제 36 조(투자대상등) ①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 및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,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(<u>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</u>)(이하 “주식”이라 한다)</p> <p>(이하 현행과 같음)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부칙 신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(시행일) 이 약관은 2007 년 6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.</p>

- Tops 아름다운 SRI 주식 1 호 변경 대비표

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	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
<p>제 36 조(투자대상등) ①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 및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,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(<u>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에 한하며</u>, 기업의 재무적 요인은 물론, 친환경 경영, 사회적 책임 경영 및 경제의 질적 경영 등 비재무적 요인에 의해서 분석해 볼 때 지속가능성에 있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기업의 주식(이하 "SRI 주식"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)(이하 “주식”이라 한다)</p> <p>(이하 생략)</p>	<p>제 36 조(투자대상등) ①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 및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,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(<u>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하며</u>, 기업의 재무적 요인은 물론, 친환경 경영, 사회적 책임 경영 및 경제의 질적 경영 등 비재무적 요인에 의해서 분석해 볼 때 지속가능성에 있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기업의 주식(이하 "SRI 주식"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)(이하 “주식”이라 한다)</p> <p>(이하 현행과 같음)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부칙 신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(시행일) 이 약관은 2007 년 6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.</p>